

제221회 정례회
2003. 12. 22.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기획행정위원회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2003. 12. 22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12월 12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12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○ 2003. 12. 18 :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권 기 수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수요와 업무량 변동에 따른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기능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 배치하고,
-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술감사·여론동향·도시관리담당의 신설과 일부 담당기능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 : 2,382명 $\Rightarrow$ 2,391명 (증9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315명 $\Rightarrow$ 1,324명 (증9명)
 - 소방·대학·의회의 정원 : 변동 없음

- 담당신설 및 인력보강 : 3담당 신설, 9명 증원
 - 감사판실 「기술감사」, 자치행정과 「여론동향」, 지역개발과 「도시관리」 담당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만)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행정수요 및 업무량의 증가와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기술감사, 여론동향, 도시관리 담당의 신설 7명과 총무과 기록물관리 1명,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지원육성 1명 등 총 9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,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☐ 제안이유

- 중평군설치에관한법률(법률 제06902호, 2003.5.29)에 의거 중평출장소가 중평군으로 신설됨에 따라 道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
- 중평출장소 명칭관련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 : 2,529명 $\Rightarrow$ 2,382명 (Δ 147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62명 $\Rightarrow$ 1,315명 (Δ 147명)
 - 소방·대학·의회의 정원 : 변동없음
- 규칙으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중 “출장소” 자구 정비
- 다른 조례의 개정 : 중평출장소 명칭관련 조례의 자구 등 정비
 - 충청북도 명예연구소운영조례 등 9건

☐ 의안전문 : 별 첨☐ 신구조문 대비표 : 별 첨☐ 관계법령 발췌 : 별 첨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2,529명”을 “2,382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1,462명”을 “1,315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중 “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”를 “직속기관, 사업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다만, 이 조례 시행 후 중평군지방공무원정원은 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제정·시행될 때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정원 범위 안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①충청북도 명예연구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9조중 “시장·군수·출장소장”을 각각 “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②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5조중 “시장, 군수, 중평출장소장”을 각각 “시장, 군수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시장, 군수 및 중평출장소장”을 “시장, 군수”로 한다.

별표1 제목중 “시장·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”를 “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”로 하고, 분야별 총무과란을 삭제하고, 분야별 안전관리과의 일련번호4 및 일련번호7중 “시장·군수·출장소장”을 각각 “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③충청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중 “시장·군수(출장소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④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시·군·출장소(이하 “시·군”이라 한다)”를 “시·군”으로 한다.

⑤충청북도순환수립장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및 제9조제1항중 “시·군·출장소”를 “시·군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, 제9조제2항, 제10조제1항, 제10조제3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, 제14조제1항 내지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중 “시장·군수·출장소장”을 각각 “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⑥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·장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,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중 “시장·군수 및 출장소장”을 각각 “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시장·군수 또는 출장소장”을 “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⑦충청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중 “시장, 군수, 중평출장소장”을 “시장, 군수”로 한다.

⑧충청북도전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,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중 “시장, 군수, 출장소장”을 각각 “시장, 군수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및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의 제2항 보관요금료중 “시, 군, 출장소”를 각각 “시·군”으로 한다.

⑨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중 “시·군·출장소”를 “시·군”으로 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,529명</u> 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 (정원의 총수) <u>2,382명</u>
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462명</u>	1. : <u>1,315명</u>
2 내지 4 (생략)	2 내지 4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 본청, 의회사무처, <u>직속기관, 출장소</u> <u>사업소</u>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 <u>직속기관,</u> <u>사업소</u>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

③ - ⑤ (생략)

□ 중평군설치에관한법률 [제정 2003.5.29 법률 제6902호]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충청북도에 중평군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충청북도 중평군 설치) ①충청북도에 중평군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

명칭	관할구역
중평군	충청북도 피산군 중평읍·도안면 일원

②충청북도 피산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중평읍과 도안면을 제외한다.

부칙 <제6902호, 2003.5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중평출장소(이하 "출장소"라 한다)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평군(이하 "중평군"이라 한다) 소속의 직원이 된다.

②이 법 시행전에 출장소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중평군의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③이 법 시행전에 출장소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·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중평군의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·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제3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출장소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중평군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.

제4조 (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특례) 중평군 설치로 인한 지방의회의원 및 중평군수의 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등과 동시에 실시한다.